

#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은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3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이은림, 곽향기, 김재진,  
김종길, 김춘곤, 박 석,  
박성연, 봉양순, 윤영희,  
이희원, 최진혁 의원(11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,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추가함(안 제 1조)
- 나. 용어 약칭이 생략돼 있어 이를 정비함(안 제3조)
- 다. 위탁기관 규정 각 호 부분을 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함(안 제3조 각호 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자연환경”을 “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 자연  
환경”으로, “그 목적”을 “목적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조례에서 “처리시설”이란”을 “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처리시설”이란”  
으로,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 
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  
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  
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서울특별시가”를  
각각 “시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매립가스처리시설”을  
“매립가스 처리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매립가스처리  
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”을 “매립가스 처리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”로  
한다.
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
2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
3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(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<u>조례에서 “처리시설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(매립가스처리시설, 침출수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<u>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 자연환경 -- 목적-----</u>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 <u>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처리시설”이란 -----</u>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-----</u> -----.</p> <p>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<u>서울특별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한국환경공단법</u>」에 따른 <u>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</u></p>

행령」 제35조제3항제1호부터

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인 등

<신 설>

<신 설>

2. 서울특별시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
3.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처리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
4. 매립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 실적이 있는 자

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

2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
3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(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시가 -----  
시가 -----
5. ----- 매립가스 처리 시설-----  
-----
6. 매립가스 처리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 ---

문서번호

2023101100000014

## 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이은림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1.

회신일 : 2023.10.12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 
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### 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(목적) 중 조례의 목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추가하고, 제2조(정의)에 용어 약칭이 생략돼 있어 이를 정비 하며, 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위탁기관 규정 각 호 부분을 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	☎ 02-2180-7953
	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**